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55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 : 김도읍 • 조수진 • 양금희

권명호 • 김석기 • 노용호

전주혜 · 장동혁 · 김용판

김성원 · 전봉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도가시·군·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6조

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③
위임하는 <u>경우에는</u> 그 사무를	<u>경</u> 우에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u>재정적 지</u>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u>원을 할 수 있다</u> .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